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2. 11. 27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11.16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12.11.22.
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12.11.27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의 택 청소행정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'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' 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용어를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순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(안 제10조의2)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

2) 심의 위원의 연임규정 및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규정 마련
(안 제14조제7항, 제14조제8항)

- "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" 에 따라 심의 위원의 연임 규정 및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규정 마련

3) 조례 본문 중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의 개정은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 제10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그 밖에 "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" 에 따라 용어 순화 및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,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